

| 권두언 |

행복한 삶과 노동 세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덴마크는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덴마크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이 거의 없고, 사회적 응집력이 강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남아야 한다.”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의 자율성은 없고,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권리는 없는 게 바로 특수 고용직이죠.”

앞의 덴마크에 대한 언급은 이번 호 <사회적 대화 국제 동향> 중 덴마크에 관한 내용 중의 일부이고, 그 아래 특수 고용직에 대한 언급은 역시 이번 호 <사회적 대화 논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서 박은정 교수(인제대)의 기고 내용 중 일부이다.

필자는 평소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고용노동 등 사회경제적 제도에 관심을 가져왔기에 이번 덴마크에 대한 소개를 특히 유심히 보았다. 기고의 내용은 덴마크에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 및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덴마크는 UN 산하기관인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인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세계 156개국 중 늘 1~2위를 다투는 행복한 나라이다. 참고로 작년과 올해 1위는 핀란드가 차지하였지만 2013~2015년 간은 덴마크가 1위를 차지하였다. 금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54위를, 일본은 58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이덕재
본지 편집위원장

덴마크는 우리에게 흔히 “황금의 삼각형, 즉 유연안정성(flexicurity)” 국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balance)을 맞춘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특고”에 대한 앞의 인용문은 이 균형의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국이 처한 상황과 조건, 역사 제도적 환경이 달라 일의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적 선(善)을 위하여 각 사회 주체들이 얼마나 조정(coordination)능력을 보여주느냐가 한 사회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핵심적 기제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3월 7일 탄력근로 의결 안건을 둘러싸고 진행된 본위원회의 파행 중에, 사회적 대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 법학자가 “일반적인 위원회의 멤버십이 권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멤버십은 책무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 말은 깊은 공감을 갖게 했다. 책무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형성이 무척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이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책무 역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호는 주로 우리 사회의 삶과 노동세계의 불균형을 다루고 있다. <연속 기획대답>으로 “격차 해소와 일자리 확대 어떻게 풀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특히 임금 격차(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궁극적으로 이 격차 해소가 일자리 문제 해결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패널로 전병유 교수(한신대), 노민선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그리고 필자가 참여하였는데 특히 노민선 박사는 작년 규모별 임금 격차를 500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제비교하면서 우리

나라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의 심각성을 잘 밝혀 준 바 있다.

이어 <사회적 대화 논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세 편의 귀중한 옥고가 담겨 있다. 우선 박은정 교수(인제대)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논의 경과 및 노동법을 다루면서 특고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결권의 전면적 보장, 사용자 개념 확대, 초기업별 단체교섭제도의 확립과 보장이라는 노동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정홍준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현황과 실태”에서 기존 통계청 조사의 과소 추정을 보정하여 추계한 결과 특고 종사자 수는 2,209,343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2%에 달하며 노동실태와 관련 특고 종사자들의 경제적 및 사용 종속성이 매우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끝으로 권오성 교수(성신여대)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근로자성”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특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 법리의 변경과 향후 특고를 노조법 체계에 포섭함에 있어 규율의 정합성을 위하여 필요한 검토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권오성 교수는 2018년 판례를 통해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문제는 해석론상으로는 이미 해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많지 않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면서, 흥미롭게도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 “오늘의 노동, 새로운 규칙을 위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분야의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들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패널로는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특고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호 〈기획 취재〉는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군산대 김현철 교수로부터 전북지역 노사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김현철 교수는 지역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중앙 단위와 지역 단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대화 현장〉 코너에서는 4,464일이라는 국내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으로 알려진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사회적 대화 국제 동향〉에서는 '19년 1/4분기 유럽 주요국들(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최근 노동동향과 중국 경제사회위원회 초청으로 진행된 출장 결과 보고를 담고 있다.

이번 격월간 「사회적 대화」 5-6월호가 풍성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귀중한 원고를 주신 필자들, 귀중한 말씀들을 해주신 각종 대담과 좌담의 패널 및 제작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